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행정자치위원회 이승미 위원

-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,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
서대문구 제3선거구 이승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8명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
「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먼저,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-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생활안전, 교통안전, 사회적 약자 보호 등
자치경찰사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
- 그러나, 현행 조례에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와의
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,
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
-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
서울시가 지역 안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
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- 다음으로,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
기관 및 법인·단체에 대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
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아울러, 지원 방법과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
준용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였습니다.

-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
 - ▲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의 안정적 추진
 - ▲체제적 재원 확보를 통한 협력사업의 지속성 강화
 - ▲서울시 자치경찰제가 내실있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본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
조치입니다.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
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